

# 바른마음경영 운영규정

**제1조(목적)** 이 규정은 회사(풀무원 전사)의 바른마음경영의 운영 및 이와 관련된 제도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기본적인 절차 및 기준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 제2조(바른마음경영 운영 체제)

- ① 회사는 회사 전체의 바른마음경영 운영을 총괄하는 CCO(Chief Compliance Officer)를 둔다. CCO는 인사위원회에서 심의 후 총괄사장이 임명하는 자가 수행한다.
- ② CCO의 업무를 보좌하고 바른마음경영과 관련된 제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바른마음경영 실천 사무국(이하 '사무국'이라 한다)을 CCO의 직속기구로 한다.
- ③ 바른마음경영 실천 담당자(이하 'TISO리더'라 한다)는 소속 사업단위 내 바른마음경영 관련 업무를 수행한다.

다만, 사업단위의 특성에 따라 개별 사업장별로 TISO리더가 필요한 경우 별도로 선임할 수 있다.

## 제3조(CCO의 의무)

- ① CCO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그 업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 ② CCO는 회사의 바른마음경영 운영을 위한 체제의 수립과 제도를 구축하여야 한다.
- ③ CCO는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한 때에는 조사 후 그 결과를 총괄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제4조(CCO의 권한)

- ① CCO는 이사회, 감사위원회, 경영진회의 등 각종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며 중요한 사항에 대하여는 이를 직접 보고할 수 있다.
- ② CCO는 그 업무를 수행함에 있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직원에게 자료 및 정보에 대한 열람 또는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직원은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한다.
- ③ CCO는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의 준수여부에 대한 점검 및 위반자에 대한 조사를 하고 위법·부당행위에 대하여는 개선 및 시정 요구를 할 수 있다.
- ④ CCO는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이해관계자에 대하여 해당 사업단위대표에게 거래중지 등을 요구할 수 있다.

## 제5조(독립성 보장)

회사는 CCO가 자신의 업무를 공정하게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상 독립성을 보장하여야 한다.

## 제6조(사업단위 내 바른마음경영 운영)

- ① 각 사업단위 대표는 당해 사업단위의 바른마음경영 업무를 총괄한다.

②각 사업단위 대표는 사업단위의 바른마음경영 업무를 실무적으로 수행할 TISO리더를 선정하여야 한다.

③TISO리더를 선정, 변경할 경우에는 사전에 사무국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각 사업단위 대표는 TISO리더가 일시적으로 바른마음경영 업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그 업무를 대신하여 수행할 업무 대행자를 지정하여야 한다.

### **제7조(실무위원회)**

CCO는 바른마음경영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별도의 실무위원회를 설치하여 운영 할 수 있다.

### **제8조(바른마음경영 실천 서약서)**

회사는 바른마음경영의 효과적인 실천을 위하여 직원으로부터 별지 제1호 서식에 의한 바른마음경영실천 서약서를 징구한다.

### **제9조(바른마음경영 프로그램)**

사무국은 바른마음경영의 실천을 위하여 다음의 프로그램을 실시한다.

- 1.바른마음경영 실천 메뉴얼의 작성 및 배포
- 2.바른마음경영 관련 교육 실시
- 3.각 사업단위 내의 바른마음경영 이행 상황을 모니터링하여 CCO에게 보고
- 4.바른마음경영 상담실 운영
- 5.조직원 또는 외부인이 바른마음경영 관련규정 위반에 대한 신고를 할 수 있는 사이버감사실 운영

### **제10조(준수 여부 확인 방법)**

사무국은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하여 바른마음경영의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

- 1.조직원의 업무 수행 절차 및 바른마음경영 실태 등에 대한 점검
- 2.CCO의 요구에 의해 작성 제출된 보고서 및 각종 자료의 검토 및 확인
- 3.내부 신고 사항에 대한 조사 및 확인

### **제11조(보고)**

①TISO리더는 사업단위 내 조직원이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하였거나 위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즉시 CCO, 소속 사업단위 대표, 또는 사무국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사이버감사실에 접수된 신고사항은 반드시 CCO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③사무국 또는 CCO는 보고내용이 불충분하거나 확인이 필요한 경우에는 직접 점검 조치할 수 있다.

### **제12조(바른마음경영 위반 시 처리)**

①CCO는 바른마음경영의 준수 여부를 점검한 후 다음에 해당하는자에 대하여는 사안의 경중에 따라 인사위원회에 회부할 수 있다.

- 1.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
- 2.바른마음경영 제규정 위반에 대한 지시.묵인.은폐 등에 관여한 자
- 3.다른 사람의 위반 사실을 고의로 보고하지 않은 자
- 4.기타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운영을 저해하는 자

②CCO는 조직원의 바른마음경영 위반 사안이 경미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조직원에 대하여 시정 조치를요구할 수 있으며, 시정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거부할 경우에는 사안에 따라 총괄사장 또는 소관 사업단위 대표에게 이를 통지하여 조치토록 할 수 있다.

### 제13조(위반 책임)

- ①조직원이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을 위반한 경우 그 1차적인 책임은 위반 당사자에게 있으며 소속사업단위 대표는 바른마음경영의 통할 지휘자로서 책임을 진다.
- ②TISO리더가 조직원의 바른마음경영 제규정의 위반 사실을 발견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고의로 이를 은폐한 경우에는 해당 직원과 연대하여 책임을 진다.

### 제14조(내부 신고 제도 운영)

- ①회사는 바른마음경영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내부 신고 제도를 운영한다.
  - ②모든 임직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인지하였을 경우 본 규정에서 정하는 방법에 따라 신고하여야 한다.
    1.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 행위
    2. 범죄 행위(조직원의 횡령, 배임, 절도, 공갈, 금품 수수 등)
    3. 직위를 이용하여 부당한 이득을 얻거나 부정한 수단으로 손해를 끼치는 행위
    4. 업무와 관련한 상사의 위법 부당한 지시 행위
    5. 문서 및 계수를 조작하는 행위
    6. 업무 및 회사 비공개 정보를 이용한 사리 도모 행위
    7. 업무 태만, 관리 감독 소홀, 월권 행위 및 불공정 거래 행위
    8. 성적인 언어나 행동에 의한 성희롱 행위
    9. 기타 제1호 내지 제8호에 준하는 행위
  - ③다른 임직원을 비방하거나 음해할 목적으로 허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 본 규정상 보상 및 신고자의 신분비밀보호에 대한 적용이 배제되고 바른마음경영 관련 제규정 위반자로 간주하여 처리한다.
  - ④전 2항에 의한 신고는 CCO, 사무국, 감사담당부서에 이메일, 우편발송, 전화, 방문신고 또는 사이버감사실 활용 등 신고자가 편리한 방법에 의한다.
  - ⑤CCO 등은 신고를 접수하였을 경우 지체없이 조사를 실시하여 그 결과를 총괄사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다만, 명확한 입증자료 없이 익명으로 신고된 경우에는 조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다.

### 제15조(신고 보상)

- ①회사는 제14조에 의하여 신고하는 자에 대하여 심사 후 다음 각호와 같이 적절한 보상을 할 수 있다.

1. 타인의 금품 수수 행위 제보 : 수수 금액의 10배에 해당하는 금액
2. 자신의 현금 수수 행위 신고 : 수수금액의 50%에 해당하는 금액. 다만, 인지 시점에서 3일 경과 시에는 감액할 수 있으며 금품을 먼저 요구한 경우나 충분히 거절할 수 있었던 경우는 제외한다.
3. 제보로 인하여 회사의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의 효과 발생시. 다만, 장기간에 걸쳐 발생하는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의 경우 산정 기준은 발생시점으로부터 1년 예상 금액으로 한다.
  - 가.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5천만원 이하의 경우 대상 금액의 10%
  - 나.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의 경우 500백만원에 5천만원 초과 금액의5%를 더한 금액
  - 다.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1억원원 초과 3억원 이하의 경우 750만원에 1억원 초과 금액의3%를 더한 금액
  - 라. 수익 증대 또는 손실 감소액이 3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1,350만원에 3억원 초과 금액의 2%를 더한 금액
4. 기타 타인의 비위 신고 시 아래와 같이 중요도에 따라 50만원 내지 500만원까지 보상할 수 있으며, 중복 사유 발생시는 큰 금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안의 중요성을 판단하여 보상 수준을 상하 1단계 조정 할 수 있다.

중요도	징계수위				
	경징계		중징계		
	견책	근신	감봉	대기발령/정직	권고사직/징계면직
일반조직원	50만원		70만원	100만원	150만원
4th Layer이하(팀장/담당)			150만원	200만원	250만원
3rd-a Layer이상(상위직/임원)	100만원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 ②회사는 보상금 지급 시 제보자의 신분 보호를 위하여 신고자가 원하는 방법에 의하여 지급한다.
- ③상기 보상금의 지급은 회사의 조직원에 대하여는 1천만원, 외부 이해 관계자에 대하여는 2천만원을 한도로 한다.

**제16조(보상금 지급 제외)** 다음 각호의 경우에는 보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신고 내용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판명되거나 입증 부족으로 인하여 사실 여부의 확인이 곤란한 경우
2. 이미 신고된 사항이거나 관련 부서 또는 외부 기관에서 인지하여 조사가 진행 중이거나 징계절차가 완료된 사안
3. 언론 보도 등에 의하여 공개된 사안
4. 익명 또는 가명으로 신고하여 신고자가 누구인지 알 수 없는 경우
5. 단순 업무 개선과 관련된 사안
6. 바른마음경영 업무 관련자가 신고한 경우
7. 기타 보상 심의 결과 보상이 부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7조(제보자 신분 비밀 보장)**

- ①회사는 신고자의 신고 내용 및 인적사항 등에 관한 일체의 사항에 대하여 그 비밀을 보호해주며 불이익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 ②회사는 내부 신고자가 근무지의 변경 등을 요구하는 경우 신분 보호를 위하여 최대한 그 의사

를 반영하여야 한다.

③회사는 진술 등의 방법으로 조사에 협조한 조직원이 불이익을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내부신고자에 준하여 보호하여야 한다.

④회사는 CCO, 신고처리 업무 담당자, 인사관련 업무담당자 등 업무와 관련하여 신고자의 신분보호 의무가 있는 자가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징계하여야 한다.